

● 제27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8.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56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인제 의원(찬성자 유동균 의원 외 27명)
- 나. 제안일 : 2017. 11. 13.
- 다. 회부일 : 2017. 1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50조 제6항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결과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단체장”)에게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됐음.

2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보고 (안 제50조제7항 신설)

- 시정질문은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단체장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 집행부의 활동 정보를 획득하고, ▷ 행정 사무의 과실(過失)을 방지하며, ▷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 특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단순히 단체장의 소신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따른 책임까지 지워 결과적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신규 정책을 채택시키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제277회 정례회(2017.11.20.일 기준)까지 총 185회에 걸쳐 서울시정과 그 밖의 공공의 관심사 등에 대한 단체장과 집행부와의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특정 사안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음.

<표-1> 제9대 의회 회기별 시정질문 현황

연도	회기 및 시정질문 현황						
2014	제254회	제255회	제256회	제257회			
	일정 없음		14회	16회			
2015	제258회	제259회	제260회	제261회	제262회	제263회	제264회
	일정 없음	15회	일정 없음	16회	일정 없음	17회	17회
2016	제265회	제266회	제267회	제268회	제269회	제270회	제271회
	일정 없음		5회	19회	일정 없음	6회	21회
2017	제272회	제273회	제274회	제275회	제276회	제277회	
	일정 없음		16회	일정 없음	13회	10회	

- 개정안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안의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각종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제안됐음.

<표-2>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생략) <u><신설></u>	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집행부는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안의 사후 조치 결과와 계획을 질문한 의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책자 제작·제출과 의정포털 자료실 등록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붙임 참조).
- 그러나 의원이 시정질문 후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집행부로부터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한 실제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 받지 못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온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시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시정질문 후 조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속하게 전달받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표-3>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u>처리결과</u> 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 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u>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u> <u>을</u>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안의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각종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수정해 시정질문 후 조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속하게 전달받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76) 및

회의규칙 개정규칙안(2257)에 대한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1항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임시회 또는 정례회중 2~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5분자유발언”을 두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안전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이 기본 조례는 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규칙은 회의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집행부에 부과하는 각각의 조항은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의 제정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사후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시정질문 의원에게 설명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에서 책자로 제작하여 의원,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고, 의정포털 자료실에도 등록하는 사후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16년~'17년 9월까지 시정질문 318건(질문의원 75명),
5분 자유발언 73건(57명) 진행상황의 사후 보고 완료

-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재와 같이 사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에 명문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건의 드림